

과천 한양수자인 입주자모집공고문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과천 한양수자인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견본주택을 운영합니다. 견본주택 미건립으로 단위세대, 단지모형 등은 관람이 불가하오니, 사이버 견본주택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 안내사항
 - * 과천 한양수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제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대체하여 사이버 견본주택(<https://www.sujain-gc.com/>)을 운영할 예정이며,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하여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당첨자발표 이후 서류접수 기간 내에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하여 분양사무실에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분양사무실 내 체류시간 등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사전예약 방법 및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 * 공급계약 시 사전 예약을 통하여 날짜 및 시간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날짜 및 시간에 지정된 인원 초과시 해당 날짜 및 시간은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 사전예약 방법 및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 ※ 예약된 날짜 및 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 분양사무실 방문 시에는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무실 방문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 제한이 됩니다.
 - * 입장 전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불가
 - * 체온 체크 시 37.5도가 넘을 경우, 코로나 검사 후 관정 대기, 코로나 확진 판정 후 자가 격리위반 시 입장 불가
 - * 손 소독, 체온측정, 방문자 수기 명부 작성 등의 사업주체에서 요구한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입장 불가
 -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공급계약 일정 및 방법은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과천 한양수자인은 분양 상담전화(031-381-0174) 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님의 문의 집중 등으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담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청약 신청 자격 상황 등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을 숙지하시고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의 청약자격사전관리 및 청약가상체험을 통하여 착오 신청 등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9.27]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1.25]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과천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1순위청약제한대상 : ①세대주가 아닌 자, ②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③2주택(분양권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청약접수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 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우선 적용하여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청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청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해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1.25]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과천시 2년 이상 거주자([2019.11.25] 이전부터 과천시 계속거주)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신청자 본인 및 필요시 세대구성원)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경기도 과천시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2019.11.25] 이전부터 과천시에 계속거주)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제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09.1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을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신청 제한 등)을 받으시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합”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또한,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함)
 - 제1호 :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제2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제3호 :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
-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최하층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그 외기관에서 접수하는 주택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분양사무실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제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제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sujain-gc.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과천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2020.06.17.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및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계약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등
 - 전매금지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 3] 제4호 가목에 의거 수도권 내 공공택지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거주무기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써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동안 계속하여 해당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4조 재당첨 제한 대상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 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중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 기간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
 - 재당첨 제한 대상자의 청약 제한 : 재당첨 제한 대상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함]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에 있는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당첨 제한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당첨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 적용(2017.09.20. 이후 모집공고 승인받은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부터 적용)}
- 경기도 과천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제한이 적용됩니다. (단, 대출 제한사항은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신청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과천시에 현재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중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자)	1순위 해당지역 (과천시 2년 이상 계속거주)	1순위 기타지역 (과천시 2년 미만/ 경기/서울/인천 거주)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정	12월 06일(월)	12월 07일(화)	12월 08일(수)	12월 09일(목)	12월 15일(수)	12월 18일(토)~12월 22일(수)	12월 27일(월)~12월 30일(목)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분양사무실 방문 접수 *사전 방문예약제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사무실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10:00~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분양사무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4 BYC빌딩 2층)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분양사무실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5:30)에서 청약 가능함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7.05.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과천시 도시정비과 - 31290호(2021.11.1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64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0층 4개동 총 174세대

[특별공급 87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15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4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2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22세대,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가 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계		
민영 주택	2021000806	01	059.9152A	59A	59.9152	21.2942	81.2094	57.3352	138.5446	42.8964	37	4	4	7	1	5	21	16	2
		02	059.9396B	59B	59.9396	21.2702	81.2098	57.3584	138.5682	42.9139	19	1	-	3	-	2	6	13	1
		03	059.9615C	59C	59.9615	21.1465	81.1080	57.3793	138.4873	42.9296	32	2	2	6	1	4	15	17	2
		04	084.5609A	84A	84.5609	28.2317	112.7926	80.9193	193.7119	60.5416	53	6	4	10	1	7	28	25	3
		05	084.9172B	84B	84.9172	27.9766	112.8938	81.2604	194.1542	60.7967	33	2	4	6	1	4	17	16	2
합계											174	15	14	32	4	22	87	87	10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면적 합산 과정에서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이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 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사이버 건본주택(<https://sujain-gc.com>)의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층수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20%) 계약시	중도금(60%)						잔금 (2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계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022.03.28.	2022.07.28.	2022.11.28.	2023.03.28.	2023.06.28.	2023.10.27.		
59A	37	1층	2	404,352,000	219,648,000	624,000,000	124,8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124,800,000
		2층	2	408,564,000	221,936,000	630,500,000	126,100,000	63,050,000	63,050,000	63,050,000	63,050,000	63,050,000	63,050,000	63,050,000	126,100,000
		3-4층	4	412,776,000	224,224,000	637,000,000	127,4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63,700,000	127,400,000
		5-9층	10	416,988,000	226,512,000	643,500,000	128,700,000	64,350,000	64,350,000	64,350,000	64,350,000	64,350,000	64,350,000	64,350,000	128,700,000
		10층이상	19	421,200,000	228,800,000	650,000,000	130,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65,000,000	130,000,000
59B	19	1층	1	406,944,000	221,056,000	628,000,000	125,6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62,800,000	125,600,000
		2층	1	411,220,800	223,379,200	634,600,000	126,920,000	63,460,000	63,460,000	63,460,000	63,460,000	63,460,000	63,460,000	63,460,000	126,920,000
		3-4층	2	415,432,800	225,667,200	641,100,000	128,220,000	64,110,000	64,110,000	64,110,000	64,110,000	64,110,000	64,110,000	64,110,000	128,220,000
		5-9층	5	419,644,800	227,955,200	647,600,000	129,520,000	64,760,000	64,760,000	64,760,000	64,760,000	64,760,000	64,760,000	64,760,000	129,520,000
		10층이상	10	423,921,600	230,278,400	654,200,000	130,840,000	65,420,000	65,420,000	65,420,000	65,420,000	65,420,000	65,420,000	65,420,000	130,840,000
59C	32	1층	2	403,898,400	219,401,600	623,300,000	124,660,000	62,330,000	62,330,000	62,330,000	62,330,000	62,330,000	62,330,000	62,330,000	124,660,000
		2층	2	408,045,600	221,654,400	629,700,000	125,940,000	62,970,000	62,970,000	62,970,000	62,970,000	62,970,000	62,970,000	62,970,000	125,940,000
		3-4층	4	412,257,600	223,942,400	636,200,000	127,240,000	63,620,000	63,620,000	63,620,000	63,620,000	63,620,000	63,620,000	63,620,000	127,240,000
		5-9층	10	416,469,600	226,230,400	642,700,000	128,540,000	64,270,000	64,270,000	64,270,000	64,270,000	64,270,000	64,270,000	64,270,000	128,540,000
		10층이상	14	420,681,600	228,518,400	649,200,000	129,840,000	64,920,000	64,920,000	64,920,000	64,920,000	64,920,000	64,920,000	64,920,000	129,840,000

84A	53	1층	3	550,981,440	299,298,560	850,280,000	170,056,000	85,028,000	85,028,000	85,028,000	85,028,000	85,028,000	85,028,000	170,056,000	
		2층	3	556,372,800	302,227,200	858,600,000	171,720,000	85,860,000	85,860,000	85,860,000	85,860,000	85,860,000	85,860,000	85,860,000	171,720,000
		3-4층	6	562,140,000	305,360,000	867,500,000	173,500,000	86,750,000	86,750,000	86,750,000	86,750,000	86,750,000	86,750,000	86,750,000	173,500,000
		5-9층	15	567,842,400	308,457,600	876,300,000	175,260,000	87,630,000	87,630,000	87,630,000	87,630,000	87,630,000	87,630,000	87,630,000	175,260,000
		10층이상	26	573,609,600	311,590,400	885,200,000	177,040,000	88,520,000	88,520,000	88,520,000	88,520,000	88,520,000	88,520,000	88,520,000	177,040,000
84B	33	1층	1	551,124,000	299,376,000	850,500,000	170,100,000	85,050,000	85,050,000	85,050,000	85,050,000	85,050,000	85,050,000	170,100,000	
		2층	2	556,891,200	302,508,800	859,400,000	171,880,000	85,940,000	85,940,000	85,940,000	85,940,000	85,940,000	85,940,000	85,940,000	171,880,000
		3-4층	4	562,593,600	305,606,400	868,200,000	173,640,000	86,820,000	86,820,000	86,820,000	86,820,000	86,820,000	86,820,000	86,820,000	173,640,000
		5-9층	10	568,360,800	308,739,200	877,100,000	175,420,000	87,710,000	87,710,000	87,710,000	87,710,000	87,710,000	87,710,000	87,710,000	175,420,000
		10층이상	16	574,128,000	311,872,000	886,000,000	177,200,000	88,600,000	88,600,000	88,600,000	88,600,000	88,600,000	88,600,000	88,600,000	177,200,000

■ 공통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되어 있음.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층별로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부동산 거래(분양계약 포함)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포함)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주)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공동주택)임.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상기 공급 금액은 추가선택품목[가구, 가전 등]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계약자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세대공용면적(벽체공용면적)과 코어면적의 합으로써, 코어면적은 코어를 함께 사용하는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음. 그리하여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분양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부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 부과됨)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전체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지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층·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동·호수가 배정됨.
-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 및 계약 체결 효력이 상실되지 않음.
- 진상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예금 통장의 제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 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 함.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세대)

구 분		59A	59B	59C	84A	84B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1	3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중소기업 근로자	1			1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장애인	2	1	1	2	1	7
	경기도 거주자(50%)	2		1	2	2	7
	서울, 인천 거주자(50%)	2		1	2	2	7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7	3	6	10	6	32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1		1	1	1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5	2	4	7	4	22
합 계		21	6	15	28	17	87

※ 본 아파트는 2021.10.22. 분양승인신청 단지로써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상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과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되어 해당 청약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또한, 생애최초 및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내용																					
	<p>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p> <p>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p>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p>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 유의사항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 대상자는 각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청약 신청자의 기재 사항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주택으로 간주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분양사무실에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하는 경우(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청약 시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함.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5세대

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2호의2(국가유공자), 8호(장기복무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

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p>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②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④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 경기지방 중소기업창업진흥성장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4세대

구 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천시에서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 이상(태아 또는 입양아 포함)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 된 주택 포함)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경기도 우선 공급세대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천시 2년 이상 계속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단, 과천시 2년 이상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함 경기도 우선 공급세대수에서 낙첨된 과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배정된 대상 세대수 내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기준(과천시 2년 이상 계속거주)이 적용되지 않음.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어나 입양아를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어나 입양아를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동점자 처리 기준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 일반공급에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중복당첨 될 경우 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 (단, 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32세대**

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7년 이내(전 배우자였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고,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 및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 11.)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과천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②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를 포함)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

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p>※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 포함)만 1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에 위해 자녀수를 산정할 때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p> <p>※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p> <p>※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함.</p>	<p>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p> <p>※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p> <p>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p> <p>※ 자녀수는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직계비속은 포함하여 산정하되, 공급신청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여야 함.</p>

■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의사항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자료로 준용함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에 따름

■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393,648원~ 8,872,376원	7,778,024원~ 9,333,628원	8,162,400원~ 9,794,87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9,794,880원~ 13,059,838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 이하)]를 선택해야 함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22세대

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생애최초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내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①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④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소형·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에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년도 납세사실 증명을 함께 제출 ※ 신청자 본인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사실 증명을 위해 사업주체에 제출하는 서류는 5년간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용이며, 신청자 및 세대원별 합산소득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과천시에 2년 이상 계속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여야 함.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20원 ~13,059,838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4세대

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부양자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청약자격요건 : 주택 건설지역인 과천시(투기과열지구) 청약 1순위 요건 충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과천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여야 함.

※ 특별공급신청은 인터넷으로만 진행하며, 분양사무실 신청 시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인터넷으로 청약이 불가능한 정보취약계층만 접수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및 유의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은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며,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세대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2항및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①번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세대수의 50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 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까지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발표 시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함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추첨에 불참 시 예비입주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배정(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배정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예비 지위를 인정함
<p style="text-align: center;">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양사무실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분양사무실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분양사무실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p>: 가입자 청약예금으로 변경(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85㎡초과 주택형 청약 신청 가능함)</p> <p>-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총족(모집공고 당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예치금 총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p> <p>: 세대주 변경(모집공고 당일까지 세대주 변경 시 1순위 청약접수 가능함)</p> <p>: 지역 간 전입(모집공고 당일까지 과천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 시 1순위 기타지역 청약접수 가능함)</p> <p>-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총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 간 예금금액 차액 발생 시 청약접수 당일까지 차액 총족 시 청약 신청 가능)</p> <p>•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p> <p>•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p> <p>• 입주자 자격 제한의 적용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 제한(1순위 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p>
--	---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 분	순 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10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 (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 주택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잔액기준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미만인 자
	2순위	모든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건대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함]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에 있는 분은 2순위 청약도 불가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 [별표1의1]

구 분	신청자격
무주택기간 적용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를 포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 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별표1의2호나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가점구분		확인할 서류 등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1명	10	5명	30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및 유의사항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결정함 전용면적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함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천시 2년 이상 거주(2019.11.25.)이전부터 과천시에 계속거주)신청자가 수도권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점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IV

청약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자	2021.12.06(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분양사무실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분양사무실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과천시 2년 이상 계속거주)	2021.12.07(화) 09: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1순위 기타지역 (과천시 2년 미만/경기/서울/인천 거주)	2021.12.08(수) 09:00~17:30		
	2순위	2021.12.09(목) 09:00~17:30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분양사무실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 ‘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분양사무실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5:3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1순위 청약일정 분리에 따른 시 유의사항
 - 과천시 2년 이상 계속 거주(2019.11.25.이전부터 과천시에 거주)자는 “1순위 해당지역”에 청약이 가능함.
 - 과천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청약이 가능함 (타지역 청약 접수시 부적격 처리됨)
-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접수 방법 : 청약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

구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람, 최하층 주택 공급 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람.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배정 함.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최대 1년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함.

구분	최하층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자 중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만 65세 이상인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세대에 속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 경쟁 시 ①,②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배정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청일자에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인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자격인증서류 :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희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1.12.15.(수) • 확인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12 27일(월) ~ 12월 30일(목) (10:00~16:00) • 장소 : 분양사무실 (*사전 방문예약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4 BYC빌딩 2층)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분양사무실(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류 제출 방법은 방문 제출이 아닌 우편(등기) 제출 등의 방법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 분양사무실 방문 시에는 당첨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 불가 / 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을 통해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순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12.15.(수) ~ 2021.12.24.(금)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12.15.(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 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VI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구분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서류 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1.12.18(토) ~ 2021.12.22(수) 5일간 10:00 ~ 17:00	분양사무실 (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4 BYC빌딩 2층)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및 추첨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이버건본주택을 확인하시어, 청약 내역과 대조 및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분양사무실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일정기간 보관후 파기함.

■ <표1>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관련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①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②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구성 정보, 세대구성원 정보,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하여 발급
	○		③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④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⑥ 출입국 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⑥-1 출입국 사실증명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신청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⑦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름)
• 가점제 당첨자 • 가점제 당첨 예비입주자		○	⑧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①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③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하여 발급]
		○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⑦ 출입국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⑧ 출입국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②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③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축확인서, 건축물철거결실신고서 등 • “소형 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일치 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표2>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자)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공통서류 (기관추천 포함)	○		①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②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구성 정보, 세대구성원 정보,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하여 발급
	○		③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④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⑥ 출입국 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⑥-1 출입국 사실증명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신청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⑦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⑧ 복부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①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경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경(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18세 이상 만19세 이하일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⑤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⑥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⑦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분양사무실에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의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③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④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⑤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분양사무실에 비치
		○	⑥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분양사무실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⑦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⑧ 소득증빙 서류 <표3> 참고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③ 소득증빙 서류 <표3> 참고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④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4> 참고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4>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		⑤ 기타(가점 확인 서류) <표1> 참고	-	• 가점 산정에 필요한 서류 <표1>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중 가점제 당첨자 서류 참조
	○		⑥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소득산정 시 직계존속을 당첨자의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② 기타(가점 확인 서류) <표1> 참고	-	• 가점 산정에 필요한 서류 <표1>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중 가점제 당첨자 서류 참조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②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③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표3>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사전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③ 해당직장 ④ 국민연금공단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원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 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2020.01.01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장소 비치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표4>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해당직장/세무서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계약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는 아파트 계약용으로 본인 발급용에 한함.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대리 계약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VII

계약 체결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계약기간	장소	문의전화	비고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021.12.27.(월) ~ 12.30.(목) (4일간, 10:00~16:00)	분양사무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4 BYC빌딩 2층)	031-381-0174	일정 및 시간 변동 시 별도 공지
예비입주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농협은행	301-0299-9289-31	코리아신탁(주)

-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후 중도금부터 잔금까지의 분양대금도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고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특별공급 포함)	0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0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발급분에 한함.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에 '아파트 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
	0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서상의 날인과 일치해야 함 ※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0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및 입금확인서 (분양사무실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0		전자수입인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인지사이트, 우체국, 은행에서 구입가능)
	0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 비치
	0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대금 납부관련 자금 증빙서류 일체
		0	자격 검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 유형별 자격 검증 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한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제3자 대리인 계약시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0		위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당사 분양사무실 비치)
		0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및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아파트 위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0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제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	--	---	----------	-----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 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함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부적격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된 호수에 계약을 취소함.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 할 수 없음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분양전환 공급임대주택을 포함한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청약이 제한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됨.
- 동일 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 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시행자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함
- 분양자(매도인)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함.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여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분양사무실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본 주택 건설지역인 경기도 과천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분양사무실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됨.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받은 고객에 한하여 대출이자를 대납예정임.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 중도금 대출이자는 분양가의 총 40%내에서 입주지정일(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시 납부된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관은 제1금융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음
- 대출은행과 대출협약에 따라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가능하나, 정부의 관련정책,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한도축소 등의 사유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고, 계약자 자기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함.(중도금대출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고,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대출취급상품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주택구입자금보증서의 발급가능 여부에 따라 대출알선조건이 변경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대출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함.(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단, 연체이자는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연체이자율을 준용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대출은행과의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정보제공 미동시에 따른 대출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에 책임지지 않음)
- 당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대출 알선이 불가하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VIII 별도 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고
		계약시	2022.3.28	입주지정일	
59A	4,360,000	1,000,000	1,000,000	2,360,000	계약시 공사부분 확인바람
59B	4,620,000	1,000,000	1,000,000	2,620,000	
59C	4,380,000	1,000,000	1,000,000	2,380,000	
84A	6,180,000	1,000,000	1,000,000	4,180,000	
84B	5,070,000	1,000,000	1,000,000	3,070,000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 대금 납부계좌	농협은행	301-0299-9279-91	코리아신탁(주)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선택을 위한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람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등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상가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함)
- 건축공정상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 등으로 인하여 변경 및 추후 선택이 불가능함.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질 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관련법상 내실발코니가 실외기실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이버건본주택 확인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근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의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위치와 상태,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비확장 세대의 상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상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천정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비확장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고는 천정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음.
- 비확장 세대의 하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하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상부층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바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비확장 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에도 발코니 바닥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샷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선홈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사이버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자세한 확장공사 내역은 사이버건본주택에서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람.

추가선택 품목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가능)

①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공기청정기능 포함)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선택안	에어컨 설치부위	제품명	업체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59A/59B/59C	1	거실+침실1	RNW0600C2SP(거실) / RNW0230C2SP(침실1)	LG전자	3,300,000	330,000	2,970,000	2개소
	옵션2	거실+침실1+침실2,3	RNW0600C2SP(거실) / RNW0230C2SP(침실1) / RNW0200C2SP(침실2,3)	LG전자	6,000,000	600,000	5,400,000	4개소
84A/84B	옵션1	거실+침실1	RNW0720C2SP(거실) / RNW0320C2SP(침실1)	LG전자	3,800,000	380,000	3,420,000	2개소
	옵션2	거실+침실1+침실2,3	RNW0720C2SP(거실) / RNW0320C2SP(침실1) / RNW0200C2SP(침실2,3)	LG전자	6,600,000	660,000	5,940,000	4개소

-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으며, 스탠드형 에어컨(거실) 및 벽걸이형 에어컨(침실1)을 설치할 수 있는 매립형 냉매배관으로 설치됨.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1안 선택시 거실+침실1은 시스템에어컨이 적용되며, 침실2,3은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매립형 냉매배관이 미설치됨.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음.(실외기는 실외기실공간에 설치)
- 시스템 에어컨, 주방가전제품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시 냉매배관의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음 (거실, 침실1~3).
- 본 시공시 설치되는 제품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실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는 방의 냉방부하를 만족하는 용량으로 가변형 벽체를 확장할 경우에는 실면적이 증가하여 에어컨 용량이 부족할 수 있음.
- 에어컨 옵션 설치안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함.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시설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설비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임.
- 실내기 위치는 사이버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시스템 에어컨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②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주택형	제품명	업체명	공급금액	계약금	잔금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빌트인양문형냉장고	전타입	BRS685050SR,677L	삼성전자	5,500,000	550,000	4,950,000	
빌트인김치냉장고	전타입	RQ22K5L01EC(좌) 또는 IRQ22K5L0EC(우), 220L	삼성전자	1,200,000	120,000	1,080,000	
전기오븐	전타입	HSB-N361B, 36L	삼성전자	400,000	40,000	360,000	
인덕션하이브리드쿡탑	전타입	CIHR-D302FB	쿠쿠전자	550,000	55,000	495,000	

- 추가선택 가전품목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계약이 가능함
- 인덕션하이브리드쿡탑 미선택시 3구 가스쿡탑이 설치될 예정임

품목	주택형	제품명	공급금액	계약금	잔금	비고
				계약시	입주지정일	
현관중문	전타입	3연동 슬라이딩 도어	1,600,000	160,000	1,440,000	
현관창고	전타입	제작품목(도어+시스템 선반)	700,000	70,000	630,000	
화장대	전타입	제작품목(입식형)	900,000	90,000	810,000	
드레스룸	59A/59B/59C/84B	제작품목(도어+시스템 선반)	700,000	70,000	630,000	
	84A		1,400,000	140,000	1,260,000	
불박이장	59A/59B/59C	제작품목	600,000	60,000	540,000	
	84A/84B		730,000	73,000	657,000	
거실아트월	59A/59B/59C	타일(800mmX400mm)	500,000	50,000	450,000	
	84A/84B		600,000	60,000	540,000	
주방 상판 및 벽체+아일랜드장	59A/59B/59C	상판 및 벽 : 세라믹	3,200,000	320,000	2,880,000	
	84A/84B	아일랜드 포함	4,000,000	400,000	3,600,000	
팬트리(또는 알파룸)	59B	팬트리(도어+시스템 선반)	900,000	90,000	810,000	팬트리, 알파룸 중 1개만 선택가능
	84A	팬트리(도어+시스템 선반)	1,100,000	110,000	990,000	
		알파룸(목도어+벽체)	500,000	50,000	450,000	
	84B	팬트리(도어+시스템 선반)	1,100,000	110,000	990,000	

- 추가선택 가구품목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계약이 가능함
- 현관 중문 설치로 인해 신발장의 크기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현관중문의 사양 및 규격은 변경될 수 있음
- 현관 중문 선택 여부에 따라 현관 조명 위치가 변경되며, 현관창고의 가구 입면이 상이하게 설치됨
- 현관 중문 선택시 디딤판 위치와 타일 나누기가 변경됨
- 현관창고 옵션 미선택시 거실 벽지로 설치됨
- 드레스룸 옵션 미선택시 침실1 벽지로 설치됨
- 드레스룸 옵션 선택시 도어는 59A,B,C타입은 가구 마감, 84A,B 타입은 브론즈 사틴유리 마감이 적용됨
- 불박이장 옵션 선택시 59A,59C타입은 침실2에 설치되며, 59B,84A,84B타입은 침실3에 설치됨
- 불박이장 옵션은 타입별로 사이즈 및 가구디자인이 상이하며, 불박이장의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도배지, 천장지, 강마루 등)
- 거실 아트월 옵션 선택시 침실 문선 두께 및 디테일이 변경됨(거실 아트월 옵션 미선택 시 거실 벽지로 설치됨)
- 주방 상판 및 벽체 +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시 세라믹의 이음매 위치, 개수 및 패턴은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상판 및 벽체 +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시 아일랜드 상판도 세라믹으로 설치되며, 84A타입은 별도의 아일랜드가 아닌 ㄷ자 주방으로 확장되어 제공됨
- 주방 상판 및 벽체 + 아일랜드장 옵션 선택시 아일랜드의 입면 및 마감, 디테일 등이 타입별로 상이함
- 주방 상판 및 벽체 + 아일랜드장 옵션 미선택시 인조대리석 상판과 타일(300x600)이 벽에 시공되며 ㄴ자 주방으로 설치됨
- 84A타입의 팬트리 또는 알파룸 옵션은 둘 중 1개만 선택이 가능함
- 84A타입의 알파룸 선택 시 침실2 조명으로 설치되며, 복도의 사각매립등이 제공되지 않음
- 84A타입의 알파룸 선택 시 침실3벽지로 설치됨
- 세대 현관창고, 팬트리, 드레스룸 유상옵션 선택시 조명기구는 직부등에서 센서등으로 설치됨
- 세대 현관창고, 팬트리, 드레스룸 유상옵션 미선택시 조명기구는 센서등에서 직부등으로 설치됨

■ 추가선택품목(가구, 가전, 시스템에어컨)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 품목	KB국민은행	349401-04-312524	주식회사 한양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음.

단위세대 선택 품목 리스트(기타)

주택형	선택품목 (확장형)			세부내용	비고
	침실2/3	확장형	가변형 벽체		
전타입	침실2/3	확장형	가변형 벽체	선택형1	분리형
				선택형2	통합형
	주방	확장형	김치냉장고장	선택형1	일반 스탠드형
				선택형2	대형 스탠드형 or 뚜껑형
					빌트인김치냉장고 미 선택시 선택 가능

- 가변형 벽체는 발코니 확장시 선택가능하며, 통합형 선택시 침실벽지는 59A, 59C타입은 침실2기준으로 설치되며, 59B, 84A, 84B타입은 침실3 벽지로 설치됨
- 유상옵션 가진 빌트인김치냉장고 선택시 김치냉장고장 선택은 불가함
- 김치냉장고장 선택형1 선택시 타입별 가구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음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구,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1) 바닥재	<강마루-길레반이 포함> 거실, 주방/식당, 복도, 침실 전체, 드레스룸, 파우더 <엔지니어드스톤 및 타일> 현관 <타일> 욕실(시멘트 몰탈포함), 발코니/보조주방(세탁실), 실외기실, 대피공간	바닥 난방(욕실 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욕실 및 발코니/보조주방 바닥 방수, 배수 슬리브, 우수, 배수, 선풍통
2) 벽, 천장	<벽> 벽지(초배지포함) 및 벽체 마감, 주방 및 욕실 타일, 스위치, 콘센트 등 마감 포함 <천장> 천장지, 반자돌림(몰딩 포함), 단천장(몰딩 등 마감 일체)	단열+석고보드 / 미장 / 콘크리트면 처리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스프링클러 배관 및 헤드, 소방 화재용 감지기 세대환기설비(장비, 덕트, 디퓨저)
3) 조명기구, 배선기구	각실 조명기구, 배선기구 일체(욕실 포함)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네트워크 스위치, 일괄소등 스위치
4) 욕실	<위생기구> 비데, 양변기, 세면기, 욕조, 욕조틀, 수전류 등 <욕실 인테리어> 욕실타일, 천장재(천장틀, 배기팬 포함), 샤워부스, 젠다이, 액세서리, 욕실장, 스위치, 콘센트 등 마감 일체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 배수 슬리브, 전기 및 통신배관배선
5) 주방	주방가구 및 가전류 일체(주방상판, 가스쿡탑, 액세서리 일체 포함), 설비 수전류(수전 포함), 주방TV	설비배관, 소방관련 시설 전기 및 통신 배관/ 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 입선), 주방 배기덕트
6) 창호	문틀(상부 덧판, 문선포함) 및 문짝(사춤 및 욕실문 하부썰 포함, 하드웨어 포함)	목재 및 ABS 도어(공문틀 포함)의 가틀 및 사춤, PVC 내부 창호, 세대 현관 방화문, 디지털 도어락, 소방관련 방화문(대피공간), 실외기실 도어
7) 가구 및 기타사항	가구류 일체(신발장, 주방가구(상판 및 수납장 일체), 시스템선반(세탁실), 수전류 일체(발코니, 세탁실)	월패드, 에어컨매립배관(침실1, 거실) 대피공간 환강기 설치(3층-10층)

■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 원]

(㎡)	59A	59B	59C	84A	84B
금액	21,207,000	21,207,000	21,181,000	28,643,000	28,669,000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하거나 계약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과 선택형의 칸막이 제거(변경)를 개별시공할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공사와 마이너스 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공동주택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방수공사·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시공 시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내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기본선택품목 선택을 희망하는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기본선택품목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IX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반 공통
 - 당 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변경)승인 2021-도시정비과_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사업계획승인(2019.4.17.)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음.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 방법 : 주택형별 면적(㎡) x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 ÷ 3.3058]
 - 주택 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소수점 5째자리에서 절삭함),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CG를 가상으로 구현되었으며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과 유상옵션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전시상품과 유상옵션에 대하여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공사 시 스프링클러는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되며,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상이할 수 있음.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이나 사이버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음.
- 사이버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유의하시기 바람.
- 이 공동주택(아파트)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사이버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사이버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용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용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 유상으로 추가 선택시에만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동호별 등의 공급금액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동의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음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함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위치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내 통신단자함은 신발장 내 설치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협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 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향후 주변 고층건물 등의 건설 및 주변협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계약 체결 후 그 침해로 인한 손해를 시행사, 위탁사, 시공사에게 청구할 수 없음
-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는 향후 사업시행자 및 인허가 관청의 일정에 따라 각 도로의 개발 및 개통시기가 상이할 수 있으며 지연, 변경(도로폭,위치,레벨 등) 또는 취소 될 수 있음. [입주시기와 도시계획도로의 개통시기는 상이하므로 해당관청 문의바람]
- 사업승인 및 본 공사 진행 후 준공 시까지 설계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본 공사 시 사이버 견본주택에 시공된 무늬, 형태, 색상, 두께와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층별 라인별로 외부 마감재료 및 외부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으며, 자재의 경우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문상의 문구 중 사업주체의 고의가 아닌 착오, 누락, 또는 오류로 인해 일부 표기가 잘못될 수 있으므로,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사업주체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재확인 할 수 있음.
- 대지면적은 예정도에 의한 현황측량결과로 산출된 것이며, 준공 후 시행하는 지적확정측량시 면적이 감소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금액발산은 없음
- **단지 외부 교통시설물과 관련한 사항은 지자체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되어 진행될 수 있음.**
- **사업부지와 관련한 각종평가(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한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설계관련 및 기타유의사항[아래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람에 변경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부여건

- 공급안내문, 분양 관련 팸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달로그 등) 및 VR동영상,CG에 표현된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특히, 홍보물등에 표시된 실내가구나 운동시설은 실제 설치·시공되지 않을 수 있음). 특히 분양홍보자료에는 주변의 건축물(주상복합 및

- 공동주택, 일반건축물등)이 표현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자께서는 반드시 주변현황을 확인하기 바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 등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변경)승인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이버 견본주택 및 사업(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일 이후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조경석 쌓기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위치·재질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건축심의 내용 이행 또는 심의내용 중의 상충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쓰레기분리수거장 및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01동 출입구, 102동 출입구, 104동 측벽에 인접하여 설치된 쓰레기분리수거장으로 인해 냄새,소음 등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출입구, 103동 출입구, 104동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된 자전거보관소로 인해 소음 등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도로는 보·차도 혼합 블록, 자전거도로겸용으로 설치되어 차량 이동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 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 도로(순환로포함)는 일부 경사진 도로와 계단이 발생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 및 기계/전기실 등은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면에 설치되며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 및 환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2의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규정] 제24조2 등에 의거하여, 기간통신사업자 협의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 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협의하여, 이동통신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공사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될 수 있음.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람. (중계기 설치 위치 : 지하2층 뿔뿔-1)
 - 단지 및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등)은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의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 등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주차계획상 동별로 균등 분배되지 않아, 일부 동은 먼거리에 주차되어 이용상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부대시설 및 외부 입면, 마감재는 색채, 입면 자문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조경식재 대상,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 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의 조경석 쌓기, 옹벽 위치 및 형태, 계단의 위치 및 형태 디자인은 준공 접수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 주변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단지외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인접 거주군의 민원 및 기타 사유로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및 디자인은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계단의 형태 및 위치,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가 상이하니 계약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충분히 확인 하시기 바람

- 아파트 1층 로비 평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은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1층(저층)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 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식재에 따른 프라이버시 확보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며, 안전매트 구간은 준공 시 변경 가능하므로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계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아파트 배치계획과 동 평면계획상 부득이 하게 일부 단위세대 침실 등이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직접 면하게 되어 엘리베이터 운행 중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본 단지의 사용가능한 지하층은 3개층으로 지하1,2층은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되며, 지하3층 일부는 전기실, 발전기실, 물탱크실 등이 계획되어있음.
- **주차 출입구의 높이는 2.7M이며**, 주차장의 차로 폭은 약 6M임(대형화물차, 사다리차 등의 진입이 불가능함)
-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 합산대수로 각 동 별 주차대수를 인정하지 않음
- 각 동 주차대수를 임의로 산정할 수 없으며 실제 이용에 있어 대지형태,주동배치에 따라 동 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장애인주차, **확장형주차**, 경형주차, 임산부주차, 전기자동차충전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 및 대수는 변경 될 수 있음.(주차계획상 동별로 균등 분배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규격은 주차장법에 의한 법적기준에 의한 규격이며, 위치에 따라 기둥, 벽체 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무인택배시스템은 지하주차장 지하1층 2개소(103,4동주변)에 설치예정이며, 이용을 위한 동선은 위치에 따라 동별로 길어질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용창고(세대 개인별 창고 아님)는 지하주차장 지하2층에 동별로 설치예정이며, 이용을 위한 동선은 위치에 따라 동별로 길어질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출입구에 설치된 우편물수취함의 위치, 개소,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 일부 구간에 옹벽 및 조경석쌓기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형태는 준공 접수 인허가 과정 또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단차이 및 주변 레벨에 따라 조경석쌓기, 옹벽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보행자 진출입로는 동 출입구 형태 및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선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및 각종 시설물 (DA,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창고, 자전거 보관소등) 및 마감재 등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CG에 표현된 주변현황(도로 및 주변건물 등)은 이미지로서, 준공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변의 실시계획 변경 및 공사중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이후 단지 주변의 도로에 의해 소음 및 분진, 진동, 교통체증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변은 향후 사업자의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 준공 시 향, 조망,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 공사(ex_태양광전지판)설비의 구조 및 형태는 미관, 효율성을 고려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남측에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북측에는 비상차량 진출입로**가 설치되어 있음. 주출입구에 인접한 101동과 **비상차량 진출입로에 인접한 104동**은 차량의 진출입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남측 주민공동시설입구는 도로와 단지 레벨차이로 인해 계단 및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준공 시 안전매트 구간 계획에 의하여 조경식재의 종류/위치, 보도선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시 토지면적은 확정 측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대내부 칸막이벽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있어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건식고정 벽체임
- 액체방수 시공시 액체방수 두께는 준공도면에 달리 기재하지 않는 한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0 0 8 : 2 0 1 6” 에 따라하여 액체방수 두께 기준 4mm를 충족하여 시공함
- 세대 전용부 및 공용부 타일 시공시 타일 뒷채움 기준 80%를 충족하여 시공함.
- 단지차량출입구 차단기 위치 및 진출입 선형구간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운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에 수납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며, 부분 수정될 수 있음. 운수분배기 설치위치의 가구 뒷판과 하부 바닥마감은 시공되지 않음
- 수분양자의 계약세대 상하좌우 세대중 마이너스 옵션 선택 세대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이너스 옵션세대가 없을 경우와 다른 단열, 마감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면적, 마감 방법의 차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단지의 마을명, 단지명, 동표기 등은 지구단위 지침 및 행정관청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03동 출입구 및 측벽에 인접하여 설치된 D.A(기계, 전기, 발전기실 등)인해 냄새, 소음 등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1~104동 지붕에 설치되는 구조물(태양광 집광판 포함)에 의해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의 침해 될 수 있으며, 일부 인접 고층세대는 태양광 집광판 반사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은 완속 3대, 충전용콘센트 2개소를 지하주차장 내에 설치하며, 입주 후 충전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함
- 단지 주변의 단독주택 경계 및 주변도로 등은 인허가 관청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조정 및 레벨 선형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과천시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으로 단지 지상, 지하(옹벽,PIT,지하3,4,5층 등)에 일부 기존 건축물이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람**
- 단지 지하층 계획은 지하3개층(지하1,2 및 3층일부)으로 기존 건축물인 지하3층 일부 및 4,5층은 지하주차장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며 점검을 위한 점검통로(지하3~5층) 및 기본(전기, 점검구등)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음.(실제로 공동주택은 지하 3개층을 쓸수 있으며, 지하1~2층은 주차장이고 지하 3층 일부는 발전기 기계,전기실로 활용됨. 지하3층 일부와 지하4~5층은 피트층으로 활용할 수 없는 공간임)
- **단지 지하3층 일부와 지하4~5층은 기존 건축물의 점검, 유지관리를 위해 기계, 전기 설비(집수정 펌프, 점검을 위한 전기시설 등) 가동시 공동 전기료가 발생 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지 않음
- 본 단지는 동측에 지상1층의 접근을 위한 보행자출입구와 차량진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보행자출입구 및 차량진출입구와 인접한 동은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01동지하1층에는 경로당 및 주민카페가 104동 지하1층에는 관리사무소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본 단지는 과천시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으로 단지 지상, 지하(옹벽,PIT,지하3,4,5층 등)에 일부 기존 건축물과, 단지 복측, 서측, 남측 경계부에 기존 옹벽이 존치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은 덩굴식재로 마감되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본 단지의 지하5층 기존 구조물 내에는 장마철 및 폭우시를 고려하여 영구배수 시스템과 벨브형 집수정이 적용되어 있음.
- 본 단지의 104동 지하1층에 재활용창고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인해 냄새, 소음 등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디자인

-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 공사시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시공됨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걸레받이, 벽지, 타일, 석재, 세라믹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사이버 견본주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필히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된 월패드 내 표현되는 GUI 디자인은 예시로 표현된 사항이므로 본 제품 설치시 변경될 예정임
-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되어있는 배선기구 (콘센트,스위치류)는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수 있으며, 사양 및 설치위치는 본공사시 변경 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및 발코니1에는 우,배수를 위한 드레인 및 선홈통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홍보물에 표현된 옥상 구조물의 크기, 위치, 모양, 구조형식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음
- **단위세대에는 별도의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함**
- **단위세대 59A,59C 타입의 실외기실은 침실3 부분에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께서는 반드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옥실천장에 설치된 점검구는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크기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타일,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사이버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엔지니어드 스톤의 경우 재료와 패턴의 특성상 사이버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되는 것이 불가함
- 본 공사시 현관 디딤판에는 분절로 인한 나누기가 시공됨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사이버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간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마루의 코어재(바디재)는 변경될 수 있음
- 다음 각목의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가. 옥실장 및 옥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나.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다.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 또는 세라믹이 시공되지 않음
 - 라.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마. 신발장 및 붙박이장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도배지, 천장지, 강마루 등)
- 본 공사시 싱크대하부 난방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난방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싱크대 하부에 온수분배기 가림판이 설치되며 타입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 및 가구

- 설치로 가려지는 부분은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본 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환기장치가 실외기실에 설치될 예정임
- 보조주방(세탁실)은 별도의 천장마감이 없으며,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음. 주방가구의 상부장이 가스미터기 설치위치와 겹치는 일부 타입의 경우 상부장의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사이버 견본주택 및 홍보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사이버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음
- 욕실 및 발코니 배수구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형태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침실1 도어에는 모터스타입, 그 외 도어는 프라이버시 타입의 도어락이 설치되며, 도어 하부는 오토실이 설치되지 않음
- 본 공사시 침실, 욕실 문에 한해 고정부 모서리 1면에 손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됨
- 본 공사시 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음. 또한 본 공사시 방화문 프레임 두께는 달라 질 수 있음
- 세대복도 및 천장의 마감치수는 현장 시공시 벽체 및 천장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욕실 등 다운부위는 실시공시 바닥 구배 등으로 인해 위치별로 단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사이버 견본주택과 단 높이 차이가 상이할 수 있음)
- 입주자 선택에 의해 발코니 확장, 비확장에 따라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개별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는 중도금대출 및 분양 옵션 잔금을 완납 후 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람
- 사이버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실 공사시 사용승인도서에 따라 시공됨
- 동일 평면 타입이라도 해당 층,호(측세대 여부 등)에 따라 외부창호, 단열재 시공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급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건물외부, 엘리베이터 홀/복도 주현관, 지하주차장, 지하층 홀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 및 색채 등은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실외기실 등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발코니에 설치되는 바닥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수전이 없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실외기실은 우수 또는 바닥드레인 설치됨)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높이는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마감재 내역은 팜플렛 및 마감자재리스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세대의 발코니, 가구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 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기, 스위치, 통합 일괄소등 스위치, 전열교환기, 홈네트워크 및 수전+금구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침실2,3 벽체 통합형 옵션 선택시 콘센트 설치위치 분리형과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현관창고,웬트리,드레스룸 유상옵션 선택시 조명기구는 직부등에서 센서등으로 설치됨
- 세대 현관창고,웬트리,드레스룸 유상옵션 미선택시 조명기구는 센서등에서 직부등으로 설치됨
- 세대 내부의 콘센트 및 통신수구의 위치 및 개수는 본공사시 변경 될 수 있음.
- 금회 공급세대의 마감재 리스트 중 미표기 사항, 외부 환경디자인 등 카탈로그에 미 표기 사항은 사업승인변경최종도서에 따라 시공함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를 배치하여 시물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감지기, 유도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미설치, 추가설치 될 수 있음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함
- 욕실 천정 내부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본 공사시 세대 목창호 문선에 도배홈이 설치되고, 가구 등에 설치되는 문선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일부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거실, 발코니, 주방, 욕실, 현관 등의 타일류 줄눈 및 패턴(나누기)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사이버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 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 높이는 천장 설비에 따라 실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샤프시는 이중창호 또는 단창 등으로 설치되나, 향후 창호사양 (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 이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규격(용량)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 할 수 있음
- 사이버 건본주택 세대 내 설치된 거울은 세제 등 생활용품(알카리성 화학성분)의 사용상 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변색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 및 확장 유상업선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비확장형 선택시 옵션품목을 선택할 수 없음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함.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방TV는 싱크대 상부장 하단에 설치되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됨
- 발코니에 설치 전동빨래건조대는 등기구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발코니 등과 스위치(배관배선 포함)는 설치되지 않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희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비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들출이 발생할 수 있음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대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튼박스 깊이,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 동일한 평면이라도 각 동 라인별로 실내폭 치수가 상이하니 동평면도를 충분히 확인하고 인지하여주시기 바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사업변경승인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실외기실, 앞발코니, 보조주방 등)의 내부 폭은 같은 타입이더라도, 중간세대 + 측세대 + 꺾임세대등의 동 조합에 따라 안목치수가 일부 법적인 오차내에서 달라질 수 있음
- 당 현장은 옥실 벽에 타일로 마감되며 특성상 사이버 건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 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주방 상판 및 벽체의 유상업선 품목인 세라믹은 패턴의 특성상 사이버 건본주택과 동일한 패턴으로 시공이 불가함
- 단위세대는 측세대, 중간세대에 위치에 따라 벽체 공유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의 안목치수 다를 수 있으며 이로인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의 인테리어 디자인 컨셉은 59B,59C타입은 사이버 건립타입인 59A타입, 84B타입은 사이버 건립타입인 84A타입과 유사하나 타입의 특성에 따라 가구 등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사이버 건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람**
- 주택법 제54조에 의거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안내할 예정임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은 국가 공인 표준시험동에서 시험한 완충재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등급이므로, 추후 실제 세대의 성능과 다를 수 있음

■ 제공/전시품목

- 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사이버 건본주택에 설치된 내, 외부창호는 본 공사시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교체될 수 있음
- 사이버 건본주택 내 설치된 생활가구류(거실장,침대,테이블,소파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 전시조명등은 연출을 위한 전시품목임
- 사이버 건본주택은 확장 및 유상업선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 선택한 유상업선에 따라 시공됨
- 사이버 건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확장형 선택시 유상 업선사향임(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임)
- 침실1(안방)에서 발코니로 나가는 분합창은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외측에 면한 창호만 방충망 설치)
- 부부욕실 바닥 배수구 위치는 샤워부스 안에만 설치됨(세면대하부에는 없음)
- 부부욕실 샤워부스 하부는 바닥과 밀착되지 않으며, 샤워시 안에서 밖으로 물이 흐를 수 있음

■ 환경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등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과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하여

- 각 세대의 조망과 향, 일조량 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이를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주변 동측면 28M도로, 북측면 단독주택이 있으며 (사업시행사 및 인허가관청의 개발계획 일정에 따라 준공시기 및 개발 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계약자께서는 반드시 주변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변 현황은 인허가관청 및 해당사업자의 사업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단지 외부 형태 (도로 및 공원, 연결녹지, 주변상황 등)은 실시계획인가 변경, 교통영향평가 변경 등으로 준공시 CG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 단지 내 동별, 세대별 일조 수인량의 차이가 있으며, 일부 세대는 동지일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총 일조시간의 합이 4시간 이상이거나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분양사무실 내 비치된 일조보고서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일조와 관련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제연급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동, 주차램프, 문주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식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으며, **특히 주출입구 인접한 101동은**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동 및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3층 일부** 에는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물탱크실(103,104동 부근)**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냄새발생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천창, D/A)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 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용 생활폐기물 보관소(쓰레기분리시설)설치 인근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미관저하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 해당시설의 위치 및 내부 계획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 (재활용 분리수거함+ 생활폐기물+ 음식물수거함)는 다음과 같음. 인접한 세대는 설치로 인해 환경권(시야간섭, 악취 등)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용 4개소(101동 출입구:1개소 / 102동 출입구:1개소 / 104동 층벽:2개소)
 - **자전거보관소는 총 4개소에 70대 설치 예정임. 설치되는 세대와 인접하여 환경권 침해(시야 간섭 및 소음)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지붕, 외벽등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 공청안테나, 피뢰설비, 태양광발전설비 등을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빛의 산란으로 인한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음
 - 102동/103동/104동 전면, 101동 출입구쪽 단지 중앙에 어린이놀이터 및 102동 전면, 101동 후면에 유아놀이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 받을 수 있음
 - 어린이집은 101동, 102동 사이에 위치하여 저층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101동지하1층에는 경로당 및 주민카페가 위치하여 저층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주변 도로 및 시설물은 과천시 개발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시설 인접한 세대에는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외부환경디자인

- 단지 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시설물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CG의 조경(식재, 시설물, 포장),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의 색채계획은 추후 인허가과정 및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감은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함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음
- 주동의 입면 줄눈계획은 추후 인허가 및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옥탑 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및 지붕 층에 설치되는 구조물(태양광 집광판 포함)에 의해 일부세대는 조망 및 일조권의 침해 될 수 있으며, 일부 인접 고층세대는 태양광 집광판 반사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3개층이하)는 석재 및 뿔칠 수성페인트, 필로티 내부 공간은 수성페인트 및 석재뿔칠, 고층부는 수성페인트, 외부 노출 옹벽 등은 수성 페인트 및 석재뿔칠로 마감
- 옥상구조물의 형태는 실시공시 디자인 및 구조물이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이후 조정관련 유지관리공사의 시행주체는 입주인을 대표하는 자치단체 또는 관리사무소에 있으며 인수인계시 드리는 유지관리계획서 및 지침서를 참고하여 관리하시기 바람
- 단지의 마을명, 동표기 등은 지구단위 지침 및 행정관청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부입면 돌출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부창호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유리, 안전난간 등은 성능개선, 안전성에 따라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차량출입구 문주의 형태는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시 홍보물,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은 입주시 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마감재 및 그래픽 등은 변동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추후 별도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 후 입주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주민카페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관계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되었음
- 분양홍보용 CG, 사이버 견본주택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입주자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 위치, 크기, 개소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따름.

■ 학교관련 유의사항

- 당 사업에 따른 유입학생 중 초등학교는 “문원초등학교”에 배치 예정이며,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중학생은 과천시중학교에 배치 가능하며, 향후 정부정책으로 학급당 인원기준이 감소하거나 학생 수 변화가 있을 경우 학생배치계획이 변경될수 있음
- 고등학교 배치 방법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주변 환경

- 분양 시 홍보물의 내용 중 교통 / 교육시설 / 주변 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취소·변경·축소·지연될 수 있음.(필히 해당 개발사업 주체 문의,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 관련 자료에 표기된 도로 폭은 도시계획선 및 교통영향평가 기준의 도로 폭이며 현황 도로 폭은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바람
- 단지의 차량 주출입구 교통량에 따라 진출입시 교통혼잡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인 과천시자원정화센터의 위치, 시설종류, 운영방식 등을 계약 전 확인바람.**
 - 위치: 과천시 구리안로 177(갈현동)
 - 시설종류 및 규모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광역시설, 현재 80톤/일→계획 200톤/일), 음식물처리시설(현재 20톤/일→계획 40톤/일), 재활용처리시설(현재 10톤/일→계획 50톤/일)※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운영방식 : 소각시설 - 24시간 연속운전 / 음식물·재활용시설 - 주간운전

■ 주택분양 및 거래(입주)시 안전관련 정보 제공

분야	법적의무사항	추가 및 보완 제공 내용
화재	스프링클러 설치	1.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2.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
풍수해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지하주차장 집수정에 배수펌프 설치
지진	내진설계	건축구조기준KDS 41 00 00 : 2019(국토교통부 고시)
방법	CCTV 설치	1. 아파트 각동 1,2층 및 최상층 동체 감지기 설치 2. 지하주차장 및 어린이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1층홀 및 최상층에 카메라 설치
장애인 안전	장애인 이동통로	출입구 경사로, 접자블럭
어린이 안전	놀이터 안전 등급	안전인증검사에 통과된 놀이시설물 설치 및 어린이나하에 안전한 두께의 탄성포장재 사용
노약자 안전	보도블럭 미끄럼방지	안전한 보행성 확보를 위해 표면가공을 통한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가진 포장재 사용

■ 홈네트워크 관련 시스템 설치 항목

구분	기준	설치항목(1)	설치항목(2)
항목	1	배선	원격검침 전송장치
	2	에비배관	차량통제기
	3	집중구내통신실 면적	욕실폰
	4	통신배관실(TPS)	주방TV
	5	단지서버실	일괄소등제어
	6	폐쇄회로TV장비	디지털도어록
	7	가스밸브 제어기	엘리베이터호출 연동제어
	8	조명 제어기	현관도어카메라
	9	난방 제어기	무인택배시스템
	10	현관방법 감지기	대기전력차단장치
	11	주동현관 통제기	환기장치제어

IX 기타 사항

입주자 사전방문확인 제도 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가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일 : 2024년 0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카페, 독서실 등
- 일부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은 조정 및 시설물 계획 변경에 따라 CG와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하자여부는 사용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됨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분양가격은 “분양가 심사결과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 됨.
- 공시내용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49,112,445	건축	철근콘크리트 공사	7,063,645	기계 설비	위생기구설비공사	173,921	
		기간이자	8,244,122		용접공사	-		난방설비공사	171,747	
		필요적 경비	3,368,956		조적공사	426,593		가스설비공사	67,395	
		그 밖의 비용	24,957,508		미장공사	464,002		자동제어설비공사	28,764	
		계	85,683,031		단열공사	544,698		특수설비공사	-	
공사비	토목	토공사	35,834	건축	방수·방습공사	325,666	공사비	공조설비공사	68,902	
		흙막이공사비	-		목공사	1,109,570		그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1,768,052
		비탈면보호공사	-		가구공사	1,000,261			정보통신공사	543,820
		옹벽공사	205,246		금속공사	605,220			소방설비공사	592,971
		석축공사	5,385		지붕 및 흡통공사	28,076			승강기공사	382,105
		우수·오수공사	26,761		창호공사	1,613,920		그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3,047,048
		공동구 공사	-		유리공사	504,350			이윤	1,978,801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2,396		타일공사	907,830		계	29,087,803	
		도로포장공사	122,767		돌공사	383,306		설계비	848,386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4,329		도장공사	564,872		감리비	1,196,899	
	정화조시설공사	-	도배공사	342,958	일반분양시설 경비	4,290,481				
	조경공사	378,707	수장공사	706,090	분담금 및 부담금	2,722,126				
	부대시설공사	13,166	주방용구공사	77,465	보상비	-				
	건축	공통가설공사	1,516,602	잡공사	100,870	기타 사업비성경비	3,071,467			
		가시설물공사	504,350	급수설비공사	318,242	계	12,129,359			
		지정 및 기초공사	35,000	급탕설비공사	216,900	그밖의 비용	5,313,648			
		철골공사	-	오배수설비공사	109,200	합계	132,213,841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21조 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목	택지비 가산비(천원)					건축비 가산비(천원)									
	계	기간이자	흙막이 공사비등	기타비용	계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법령개정때 따른 추가건설가산비		지하주차장 층고증가 공사비	분양보증 수수료
							홈 네트워크	초고속통신 특등급	에어컨 냉매배관	기계환기 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범죄예방 시설		
금액	36,570,586	8,244,122	233,979	28,092,485	5,313,648	318,543	1,389,918	596,069	370,568	1,132,870	534,073	36,197	413,510	193,644	328,256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 (원)	비고
건축	주식회사 아이티엠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896,599,000	부가가치세 포함
전기/소방/통신	주식회사 지여이앤씨	300,300,000	

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 보증서 발급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원)	보증기간
제02412021-101-0000500호	105,771,072,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 의무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시행사 및 시공업체 현황

	시행사	시공사	비고
법인명	과천개발(주)	(주)한양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6층	인천 남동구 미래로 14,2층	
사업자등록번호	816-86-00995	110-81-14611	

분양관련 문의

대표번호	분양사무실 위치	홈페이지	비고
031-381-017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4, 2층	http://www.sujain-gc.com	

- 분양사무실 방문시 별도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있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람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한양수자인 분양사무실 및 고객센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